

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

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”을 “3억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”로, “원도급 제한을 고려할”를 “원도급을 제한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(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)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건설공사의 발주방식) ① ~ ③ (생략)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 억원 이상 <u>3억원 미만인 전문공</u> <u>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</u> <u>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</u> <u>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</u> <u>상인</u>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 설사업자의 <u>원도급 제한을 고려</u> 할 수 있다.	제8조(건설공사의 발주방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3억 5천만원 미만인</u> <u>전문공사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원도급을 제한할</u> -----.